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 규정

제정 2012. 3. 1. 개정 2016. 9. 1. 전부개정 2017. 3. 8. 개정 2018. 12. 28. 일부개정 2021. 06. 17.

전부개정 2022. 05. 25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」,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과 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재난안전관리본부 운영 규정」에 따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연구실 사고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에 설치한 연구실과 이와 관련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적용한다. 다만,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」(이하「연구실안전법」이라 한다),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연구실"이란 본교가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·장비·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·실습실·실험준비실을 말한다.
- 2. "연구주체의 장"이란 본교의 총장을 말한다.
- 3. "실험실습안전센터장"이란 본교 공동실험실습관장을 말한다.
- 4. "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"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고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.

- 5. "위험물안전관리자"란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선임된 사람을 말한다.
- 6. "연구실 관리부서장"이란 본교 내 연구실을 설치한 부서의 장으로서 단과대학장, 대학원장, 연구소장, 센터장, 사업단장 등을 말한다.
- 7. "연구실책임자"란 연구실별로 지정된 전임교원을 말한다.
- 8. "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"란 연구활동종사자 중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9. "연구활동종사자"란 연구 및 실험·실습에 종사하는 본교 교직원·연구 원·대학생·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.
- 10. "안전점검"이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 안 또는 점검기구 등을 활용하여 연구실에 내재 된 유해인자를 조사하 는 행위를 말한다.
- 11. "정밀안전진단"이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「연구실 안전법」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·평가를 말한다.
- 12. "중대연구실사고"란 연구실 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「연구실안전법시행규칙」에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.
- 13. "연구실사고"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·질병·신체장해·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·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.
- 14. "유해인자"란 화학적·물리적·생물학적 위험요인 등 연구실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.
- 15. "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"이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.
- 16. "실험폐기물"이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폐산, 폐알칼리, 폐 유기용제, 할로겐족 폐유기용제, 연구·검사용 폐시약, 폐유, 폐 유독물질 등을 말한다.
- 17. "연구실 안전표식"이란 연구실 내 위험장소·시설·물질 등에 대한 경고,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·안내, 그 밖에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포함한 그림, 기호 및 글자 등을 말한다.

제2장 연구실 안전관리 조직 및 직무

- 제4조(연구주체의 장의 책무)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유지·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지며, 국가의 연구실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 -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활동 수행 중 발생한 상해・사망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③ 연구주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연구실 설치·운 영 기준에 맞게 연구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제5조(연구실 안전관리 전담조직)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"실험실습안전센터"와 안전관리 심의기구인 "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"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②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관련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정 또는 선임하여야 한다.
 - 1. 「연구실안전법」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
 - 2.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
 - 3.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 지도·관리·감독을 위한 연구실별 연구실책임자
- 제6조(실험실습안전센터) ① 실험실습안전센터는(이하 "센터"라 한다)는 「연구실안전법」,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원과 조교 등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.
- ② 센터의 기능과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- 1. 연구실 안전점검 및 연구실 안전관리 활동과 관련된 제반 사항
- 2. 연구실 내에서 발생 된 실험폐수 등 환경 관리
- 3.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보조
- 4.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관리
- 5. 위험물저장소 운영 및 유지관리
- 제7조(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) ①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.
 - 1.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2. 위원장은 실험실습안전센터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산학협력부단장이

된다.

- 3. 위원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 은 본교 교원, 직원, 조교, 학생 중에서 실험실습안전센터장의 추천으 로 연구주체의 장이 임명한다.
- 4.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
- 1. 연구실 안전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- 2.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
- 3. 연구실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
- 4. 기타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고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.
-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.
- 제8조(실험실습안전센터장의 책무) 실험실습안전센터장은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 총괄 업무책임자가 되며,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총괄한다.
- 제9조(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책무) 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「연구실 안전법」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며,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, 연구실사고 로 인한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 여야 한다.
-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정당한 직무에 대한 지시 및 업무수행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가 있을 경우 연구주체의 장은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④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.
 - 1. 안전점검 · 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의 수립 및 실시
- 2.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

- 3. 연구실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 · 조언
- 4.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·관리
- 5. 「연구실안전법」또는 동법 시행령이나 본교 연구실안전관리규정(이하 "안전관리규정"이라 한다)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 건의
- 6. 그 밖에 연구실안전관련 규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 성 확보에 관한 사항
- 제10조(위험물안전관리자의 책무)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 - 1.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당해 작업이 기술기준과 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지시 및 감독하는 업무
 - 2.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 업무
 - 3. 화재 등의 재해의 방지와 응급조치에 관하여 인접하는 관련 시설의 관계자와 협조체제의 유지
 - 4.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일지의 작성ㆍ기록
 - 5. 그 밖에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, 위험물 설비를 보수하는 작업 등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작업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의 수행
- 제11조(연구실 관리부서장의 책무) ① 연구실 관리부서장은 소속기관의 연구실별로 「연구실안전법시행령」제7조에 따른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의 감독업무를 총괄 수행하여야 한다.
- ② 연구실 관리부서장은 연구실책임자 변경 및 공간 조정(개설, 폐쇄, 이전, 확장, 감축, 통합 등) 등 사유가 발생 된 경우에는 실험실습안전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연구실책임자의 책무)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며, 연구실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
 - ②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.
- ③ 연구실책임자의 직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

- 1.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 실시
- 2.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연구실에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해 착용 지시
- 3.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및 결과 보고
- 4. 일상점검 실시 및 결과 비치
- 5. 안전표식의 설치 및 관리
- 6.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(변경 사항 포함), 유해화학물 질 취급 현황, 가연성·독성가스 현황 등의 보고
- 7. 연구실 위험요인으로 인한 긴급 조치 시 실험실습안전센터장에게 즉시 보고
- 8. 연구실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
- 제13조(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책무)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책임 자의 지시에 따라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제14조(연구활동종사자의 책무)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1.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수칙 등의 준수
 - 2.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・훈련의 이수
 - 3. 「연구실안전법」 제21조에 따른 건강검진 수검
 - 4. 연구실 내 위험요인 발견 시 연구개발활동 중단 등의 긴급 조치 및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에게 즉시 보고
 - 5. 연구실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후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 당자에게 즉시 보고
 - 6. 연구실책임자의 지시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수

제3장 연구실 안전관리

제15조(안전교육)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교육·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, 세부적인 대상·시간·내용은 「연구실안전법」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[별표3]과 같다.

-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 교육·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.
- 제16조(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및 결과 공표) ① 연구주체의 장 은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·관리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- ②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. 단,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연구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
 - 1. 연구개발활동에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
 - 2. 연구개발활동에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
 - 3.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
- ③ 실험실습안전센터 주관하에 안전점검 및 진단을 위한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대학 내 연구실을 대상으로 정기점검·특별안전점검·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, 연구실 일상점검은 당해 연구실 소속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실시하여야 한다.
- ④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「연구실안전법」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- 제17조(건강검진) ① 연구주체의 장은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특수건강검진은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검사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- ③ 건강검진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- 제18조(보험가입)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연구활동 중 상해 · 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-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.
- 1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

- 2. 「공무원연금법」에 따라 제1항의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
- ③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보험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연구활동종사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제2항에 따른 치료비 지원 시 대상·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, 그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.
- 제19조(연구실 안전표식의 설치 및 부착)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연구실 안전표식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한다.
- ② 연구실 안전표식의 종류, 형태, 색채, 용도 및 설치·부착 장소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제38조, 제39조, 제40조에 따른다.
- 제20조(중대 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및 공표) 연구주체의 장은 중대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, 보고한 연구실 사고의 발생 현황을 대학 또는 연구실안전관리시스 템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.
- 제21조(사고대처 방안 및 행동요령) ① 연구실책임자는 사고 발생 시 즉각 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실 사고대응 요령 및 사고보고 체계를 구축하여 연구실에 비치하여야 한다.
- ③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내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연구실 사고대응 요령을 숙지하고, 사고 발생 시 요령에 따라 대응하여야 한다.
- 제22조(연구실사고 조사 및 조치) ① 연구실사고 발생 시 연구실 관리부서 장은 당해 기관의 관계자로 구성된 현장 사고조사반을 구성하여 신속히 사고처리를 하고, 그 결과를 즉시 실험실습안전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연구실 관리부서장 및 연구실책임자는 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실 사용 제한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③ 중대 연구실사고 발생 시 연구주체의 장은 당해 연구실 관리부서장,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안전관련 전문가 등으로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, 원인을 조사,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④ 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점검 결과 연구실의 안전한 이용

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실의 사용제한 및 폐쇄 등을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.

- 제23조(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) ①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확보하여 야 한다.
 - 1. 연구활동종사자 보험료
 - 2.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·훈련
 - 3.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
 - 4.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
 - 5.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·유지 및 보수
 - 6.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
 - 7.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
 - 8.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화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 중 1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연구실 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반영된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.
- 제24조(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) 연구실책임자는 「연구실안전법시행령」제 2조에 따라 연구실의 유형에 맞게 안전관리를 수행해야 한다.
- 제25조(연구실 실험폐기물 관리) ① 연구실책임자는 실험폐기물의 발생량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, 발생 된 실험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.
 - ② 교내 실험·실습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관리·처리에 관한 사항은 지 침으로 정한다.
- 제26조(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) ①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 취급작업 시출입자에게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시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.
- ②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저장소의 구조, 설비 등의 이상 발견 시 즉 시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실험실습안전센터장에게 알려야 한다.

부 칙 <제48호, 2012. 3. 1>

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342호, 2016. 9. 1.>

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370호, 2017. 3. 8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459호, 2018. 12. 28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615호, 2021. 6. 17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88호, 2022. 5. 25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